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(소규모합병 관련 권리주주 확정)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(주)오뚜기와 오뚜기삼화식품(주)과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,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29일 ~ 2017년 1월 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6년 12월 13일

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05

주식회사 오뚜기
대표이사 이강훈

명의개서대리인

주식회사 KB국민은행장 윤종규